**㈜영진공사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주)영진공사(이하 도급인이라 함)와 현대무벡스 주식회사(이하 수급인이라 함)는 ~~회사~~ 도급인의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아래의 주요 계약 내용 및 첨부 문건의 내용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 주요계약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약 명** | | | ㈜영진공사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 | | |
| **계약금액** | | | 금 삼억칠백만 원 (\307,000,000원)<VAT별도> | | | |
| **계약기간** | | | 2022. 6.15. ~ 2022. 12.31. | | | |
| **계약대상** | | |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 | | |
| **지급조건** | **구분** | | **청구금액** | | | **지급조건** |
| **시스템 개발**  **용역비** | **선급금**  **(20%)** | 61,400,000원<VAT별도> | | | 계약 체결 |
| **중도금1차(30%)** | 92,100,000원<VAT별도> | | | 중간보고 및 장비발주 |
| **중도금 2차**  **(30%)** | 92,100,000원<VAT별도> | | | 통합테스트 완료 |
| **잔금**  **(20%)** | 61,400,000원<VAT별도> | | | 프로젝트 검수완료 |
| **보증보험** | | | 선급금 | 보증보험증권제출 | | 선급금액 |
| 계약이행 | 보증보험증권제출 | | 계약금액의 10/100 |
| 하자이행 | 보증보험증권제출 | | 계약금액의 10/100 |
| **지체상금율** | | | 계약이행지체 | | 지체일당1.5/1,000 | |
| **지체상금 한도** | | | 특수조건에 따른다. | | | |
| **하자보수 책임기간** | | |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 | | | |
| **납기** | | | 2022년 12월 31일 | | | |
| **업무수행장소** | | | 당사자간 합의한 장소 | | | |

● 별 첨 : 계약특수조건, 계약 일반조건, 납품상세서, 비밀유지조건

**계약일자 2022년 6월 15일**

|  |  |
| --- | --- |
| (도급인) 인천 중구 서해대로209번길 23  주식회사 영진공사  대표이사 이 준 배 | (수급인)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무벡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현 기 봉 |

**[별첨1]**  **계약 특수조건**

**제1 조【목 적】**

이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에 관한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대금지급】**

1. 수급인은 본 계약서 기재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도급인에게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3. 계약서 기재 중도금 1차 지급조건 중 중간보고 및 장비발주가 동시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 중간보고 및 장비발주가 모두 성취되는 날 지급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문서】**

1. 본 계약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납품상세서, 수행계획서, 비밀유지조건으로 구성된다.
2. 각 계약문서 간 규정 및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납품상세서, 수행계획서, 비밀유지조건 순으로 그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4조【과업범위】**

1. 수급인은 본 계약에 따라 아암 제2보세 ODCY 자동화 게이트 및 재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급인~~ 도급인에게 제공한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과업은 다음 각호의 과업으로 구분한다.
3.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4. Gate 설비의 설치
5. 서버설치 및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6. 본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각 과업별 계약대금은 다음과 각호와 같다.
7. 응용소프트웨어의 개발 금 일억칠천만원
8. Gate 설비의 설치 금 구천만원
9. 서버설치 및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금 사천칠백만원
10. 본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업은 구체적으로 납품상세서 기재에 의한다.

**제5조【지체상금】**

1. 지체상금에 관하여 본 계약 일반조건 제30조 제1항, ~~제6항~~ 전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이행을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한다.
3. 본조 제2항에 따른 이행의 지체는 본 특수조건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각 과업별 이행여부를 기준으로 이행지체를 판단한다.
4. 본 계약 특수조건 제6조 및 일반조건 제18조 및 제30조 제3항의 검수는 본 특수조건 제4조 제2항 각호 기재 과업별 검수를 의미한다.
5. 본 특수조건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각 과업에 관하여 본조 제1항에 따른 이행지체가 발생할 경우, 이행이 지체된 각 과업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에 각 과업별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지체상금을 산정한다.
6. 지체상금 산정 시 납품이 완료된 항목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7. 본 계약에 따른 각 과업별 지체상금은 본 특수조건 제4조 제3항 기재 각 과업별 계약대금의 10%를 한도로 한다.

**제6조【검수 등】**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 중 통합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당해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통합테스트를 수행한다.
2. 양 당사자는 본 계약체결 이후 납품상세서 및 과업범위를 참고하여 서면으로 검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검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수한다.
3. 수급인은 본조 제2항에 따른 검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한다.
4. 본조 제2항에 따른 검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수할 수 없거나, 본조 제3항에 따른 검수보고서에 기재할 수 없는 정성적인 품질 및 성과 등에 관한 평가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은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이 본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작성한 보고서 및 검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검수한다.
6. 본조 및 본 계약 일반조건 제18조 기재 검수의 대상은 수행 계획서 및 설계서내 과업(본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한 계약변경으로 인한 최종과업을 말한다) 및 본조 제1항의 검수 체크리스트 기재사항으로 한정한다.
7. 도급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5영업일까지 검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검수대상 특수성, 검수환경조건 및 기타 특수사정 등을 원인으로 본 계약 일반조건 제18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완료 이전에 별도로 검수기간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다.

**제7 조 【교육】**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교육계획에 따라 도급인에게 교육(교육관련 자료를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실시한다.
2. 교육대상은 본 계약의 목적물을 운영하거나 유지보수 하는 도급인의 근로자로서, 도급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3. 도급인이 수급인 제안 교육 이외에 별도의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며, 세부절차, 범위, 비용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한다.

**제8 조 【일반조건의 적용】**

1. 본 계약 일반조건 중 과업지시서는 납품상세서로 대체한다. 다만, ~~다만,~~ 납품상세서를 수급인이 제공하므로, 그 성질상 적용할 수 없는 본 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은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제9 조 【계약의 이행】**

1. 수급인은 납품상세서 기재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기재 표에 기재된 목록에 따라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이행 중 분석/설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로 개발 소프트웨어의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조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구성 변경 시 개발 프로그램 본수가 증가할 경우, 계약대금 변경을 협의한다~~.

**[별첨2]**  **계약 일반조건**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의뢰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축(이하 '개발'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설비라 함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 기기, 자료,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착수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계약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인이 납품기일에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거나 구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예정을 말한다.
6. 기술자료라 함은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8.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인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9.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소프트웨어를 도급인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도급인이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원칙】**

1. 각 당사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계약문서】**

1. 본계약은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산출물내역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비밀유지조건 등으로 구성된다.
2. 각 계약문서 간 규정 및 해석에 충돌이 있을 경우,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일반조건, 산출물내역서, 과업지시서, 수행계획서, 비밀유지조건 순으로 그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우선한다.
3. 각 당사자는 서면합의로 계약문서를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4. 본 일반조건 제28조에 따라 계약이 변경될 경우, 당해 문서는 본조에 따른 계약문서에 포함된다.

**제5조【과업지시서의 교부 등】**

1. 도급인은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수급인에게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다만, 이미 과업지시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과업지시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 동의없이 과업지시서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대여할 수 없다.
4. 도급인은 수급인의 서면동의로 과업지시서를 서면으로 ~~변경~~추가할 수 있다. 도급인은 과업지시서 ~~변경~~추가 이후 수급인에게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개발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제6조【산출물내역서의 교부 등】**

1.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한 날까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정한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다만, 이미 산출물내역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산출물내역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의 서면 동의없이 산출물내역서를 변경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ㆍ대여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동의로 산출물내역서를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5.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개발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6. ~~변경된 내용이 본 계약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
7. 본 계약 체결할 당시에 변경된 내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경우
8.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산출물내역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7조【계약이행의 방법 등】**

1.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급인에게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과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의 실시여부·일정·횟수·시간등을 정한다. 다만, 비용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부담한다.
3. 수급인은 본 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그 내용이 관련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경우에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발생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며, 변경된 개발등의 업무를 고려하여 납품기한을 연장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법한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법한 지시를 계속할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중간보고】**

1. 수급인은 수행계획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도급인에게 중간보고를 한다. 다만, 각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중간보고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도급인의 비용으로 중간보고 이외의 추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중간보고 결과 수급인의 과업수행이 과업지시서 및 산출물내역서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설비 등】**

1. 수급인은 법적 하자가 없는 설비를 사용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2. 도급인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수급인과 사용조건을 협의하여 수급인에게 장소,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본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설비 등을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후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4. 수급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본 계약이행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 적합한 제반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지식재산권 등의 보증 등】**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용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 및 기술과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수급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증한다.
2. 수급인은 본 계약의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이 필요할 경우, 수급인의 책임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도급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식재산권등을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로만 사용하고, 도급인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와 지식재산권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귀책사유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당해 분쟁을 처리하고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추가작업】**

1. 도급인은 본 계약 외에 추가로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하 ‘추가작업’이라고 한다) 수급인의 서면동의 받아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추가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추가작업의 위탁연월일, 내용, 계약금액 및 제작조건 등이 기재된 추가작업서를 발급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이 본조 제2항에 따른 추가작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에 적용된 단가, 작업량 등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작업에 대한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이행의 중지 또는 기간의 연장】**

1. 수급인은 도급인이 본 계약에 정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작업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중지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중지된 기간은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2. 도급인의 귀책사유 또는 태풍, 홍수,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본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본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본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본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지 않고,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계약대금을 조정한다.

**제13조【현장유지 및 노무관리】**

1. 수급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인력에 대해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기책임과 부담으로 현장을 유지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기타 인력에 대한 법령상 책임을 지고 노무 관리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도급인도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은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인력에 대하여 도급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시설물ㆍ설비ㆍ기계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수급인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신고한다.~~

수급인의 인력은 위험·유해의 우려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신고하고, 이 경우 도급인은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인력에 대하여 도급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시설물ㆍ설비ㆍ기계 등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책임을 진다.

1. 도급인은 본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유해ㆍ위험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취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조치에 협조한다.
2. 수급인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개별 주문·지시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종사하는 수급인의 인력을 관리하는 자(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를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4. 수급인 인력의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5. 과업수행에 관한 도급인과의 연락 및 조정
6. 기타 본 계약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즉시 도급인에게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8. 도급인은 현장대리인에게 과업수행과 관련한 주문·지시 등을 하고, 수급인의 인력에게 직접 하지 않는다. 다만,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인이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9. 도급인이 수급인의 인력에게 직접 주문·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원인으로 발생하는 위험, 비용, 책임 등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본조 제8항 단서 및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그 지시 등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0. 본조에 따른 현장대리인의 업무에 본 일반조건 제28, 32조에 따른 계약의 변경, 해제 및 해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11. 계약기간 중 수급인이 투입인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도급인과 합의하여 동등 또는 이상의 기술력을 가진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단 14일 이전에 업무 인수인계 등을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관리비】~~**

1. ~~도급인은 본 계약에 따른 유지보수가 법률 상 안전관리비 집행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2. ~~도급인은 본조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본조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정보시스템의 유지ㆍ관리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4.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시 본조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제출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이를 정산한다.~~

**제15조【하도급】**

1.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본 계약에 따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의 손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5. 도급인의 지명에 따라 하수급인을 선임하고,
   1.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한 경우
   2.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제16조【납품】**

1. 수급인은 본 계약에 정한 시기에 산출물(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결과보고서 등 각종 리포트, 모듈별 설계서, 설명서, 매뉴얼,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보수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산출물이라 한다)을 도급인에게 납품하고, 도급인은 이를 수령한 경우 수급인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2. 수급인은 납기 전에 산출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 도급인과 협의하여 납품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당사자 간 협의로 과업지시서의 변경 없이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기간의 단축을 이유로 계약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4. 도급인의 요구로 계약 기간이 단축된 경우, 도급인은 단축을 위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5. 수급인은 납기까지 도급인에게 산출물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본 일반조건 제28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그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6. 본조 제5항의 경우, 도급인은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7. ~~수급인은 도급인과의 협의로 본조 제1항에 따른 산출물 중 일부를 계약기간 이후에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납품의 수령】**

1. 도급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인의 납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2. 도급인이 본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의 효과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수급인은 도급인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수급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 이외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도급인은 도급인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산출물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을 부담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이 산출물을 다시 납품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검 수】**

1. 수급인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이행 완료 혹은 납품을 한 경우 도급인에게 검수를 요청하고, 도급인은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지체없이 검수한다.
2. 산출물에 대한 검수의 기준 및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3. 도급인은 본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과업의 결과물 등을 검수하여 검수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검수대상 특수성, 검수환경조건 및 기타 특수사정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는 별도의 검수기간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급인의 검수에 입회하는 등 협조한다.
5. 도급인은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이유로 검수를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다.
6. 도급인은 검수를 완료하는 즉시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검수 결과를 통지하며, 본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7. 도급인은 본조에 따른 검수의 결과가 불합격인 경우 반드시 불합격 사실과 불합격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8. 수급인은 검수결과가 불합격일 경우 하자를 치유한 이후 도급인에게 재검수를 요청한다. 재검수 기간에 관하여는 본조 제3항, 제6항을 준용한다.
9. 수급인은 검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합격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불합격 사유에 대해 소명 등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도급인은 재검수하여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재검수 기간에 관하여 본조 제3항, 제6항을 준용한다. 수급인의 이의신청 이후 검수결과가 합격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초 검수요청 이후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0. ~~도급인은 최초 검수비용을 부담하고, 수급인은 본조 제8항에 따른 재검수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 제9항에 따른 재검수비용은, 검수 결과가 합격일 경우 도급인이 부담하고 불합격일 경우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9조【지식재산권】**

1. 본 계약에 따른 산출물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다)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납품에 앞서 이미 수급인이 취득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도급인의 소유로 한다.
2. 도급인은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산출물에 포함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그 대가는 본 계약의 계약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출물을 이용할 수 없다.
4. 출판하는 것
5. 도급인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이용하는 것
6. 시스템 운영 및 관련 교육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7. 제3자와의 영업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8. 계약서에 정한 제한에 반하여 이용하는 것
9.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10. 수급인은 본조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 범위 내에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다.
11. 수급인은 수급인의 지식재산권 양도 또는 담보설정 등을 원인으로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12. 제3자가 본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산출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또는 이와 유사한 분쟁을 일으킬 경우, 귀책사유 있는 상대방은 귀책비율에 따라 당사자를 면책시키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13. 각 당사자는 제3자가 지식재산권에 관한 침해 주장을 할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처하고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20조【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1. 도급인은 산출물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이후 수급인에게 도급인 직원을 대상으로 산출물의 사용,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여부·일정·횟수·시간~~·비용~~ 등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3. 도급인은 본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한다.
4.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본 계약 및 산출물내역서 등의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원 이외의 추가 자원이 투입되는 경우
5. 교육이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이 아닌 가치있는 지식습득의 기회로 인정되는 경우
6. 도급인은 산출물에 대한 검수가 완료된 이후 수급인에게 산출물의 사용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지원의 기간·일정·횟수·시간·비용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한다.

**제~~21조【계약대금의 조정】~~**

1. ~~도급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수급인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계약대금을 증액한다.~~
2.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계약대금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도급인에게 계약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4. ~~수급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의 납품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된 경우~~
5.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원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급원가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만큼 변동될 경우, 도급인에게 계약대금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6.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7.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재료비용이 변동된 경우: 나머지 계약대금의 3퍼센트~~
8. ~~노무비가 계약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9.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계약대금의 3퍼센트~~
10.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계약대금의 3퍼센트~~

**제22조【대금지급】**

1. 도급인은 수급인이 본 계약조건에 따른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서에 정한 대금지급 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계약대금을 지급한다.
2. 본 일반조건 제18조에 따른 검수 결과,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합격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재검수에 합격할 때까지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계약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 지연된 계약대금에 대하여 상사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1. 도급인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도급인이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도급인의 수급인에게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양도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일체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5조【계약이행보증】**

1. 수급인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서에 규정한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 수급인은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3. 본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기간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단,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계약기간을 반영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한다.
4. 도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으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한도로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있고, 도급인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게 그 초과하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의 계약이행완료 후 즉시 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6.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보증할 경우, 도급인에게 계약대금지급의 보증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조 제2항 내지 5항을 준용한다.

**제26조【선급금보증】**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선급금 청구 시 ~~수급인에게 선급금보증보험증권(혹은 도급인이 인정하는 증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본 계약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선급금보증보험의 범위는 계약서에 정한 기준에 따르며, 보증기간은 선급금보증보험증권 발행일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로 한다.
3. 수급인이 본조 제1항에 따른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선급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선급금 몰수 등에 관하여는 본 일반조건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7조【비밀유지】**

1. 각 당사자(정보수령자, 이하 본조에서 같다)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정보제공자, 이하 본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상 비밀을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2. 본조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조건에 따른다.

**제28조【계약의 변경】**

1. 각 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서면합의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등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는 본조 제1항에 의한 계약 변경 시 계약대금 관련 사항을 반드시 협의한다.
3. 각 당사자는 계약기간 중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과업범위의 변동 등을 원인으로 계약대금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본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사유없이 작업기간 연장 또는 작업물량의 증가가 발생할 경우, 계약대금의 증액을 ~~청구~~협의할 수 있다.
5. 본 계약은 각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의 기명, 날인(또는 서명)한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계약변경은 효력이 없다.

**제29조【손해배상】**

1.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비율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2. 각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3.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라 도급인에 부담하는 손해는 계약대금을 초과하지 않는다.
4. ~~도급인이 수급인~~ 각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해지/해제 통보를 하거나 계약이행을 거절하여, ~~수급인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된 ~~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에 동의할~~ 경우, ~~수급인은~~각 당사자는 본 일반조건 제32조 제6항에 따른 정산을 청구하는 이외에 아직 수행하지 않은 과업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1. 수급인은 수급인의 귀책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도급인에게 아래와 같이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  |
| --- |
| **지체상금** = **(지체일수)** × (총 계약금액) × 계약서에 규정한 지체상금율 |

1.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수급인이 계약기간 내에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 이후 검수에 합격한 경우 검수완료 시기와 관계없이 검수에 소요된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수급인이 계약기간 내에 검수를 요청하였으나 검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도급인의 불합격 통지일 중 뒤에 오는 날부터 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4. 수급인이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과업수행을 완료하거나 검수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수(재검수, 최종검수 등을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5. 계약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6. 수급인이 다음 각호의 원인으로 계약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를 본조 제1항 기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7.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
8. 도급인이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 공급 지연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9.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10. 기타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과업범위 중 일부에 대한 검수가 완료되거나 도급인이 사용하는 경우, 본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 계산 시 검수완료되거나 도급인이 사용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공제하고 계산한다.
12. 당사자 간 지체상금의 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5%~~ 10%를 한도로 한다. 과업범위 중 일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거나 도급인이 사용하는 경우 지체상금 한도에 관하여 제5항을 준용한다.
13.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본다.~~

**제31조【하자 보증】**

1. 수급인은 검수 완료 시점부터 계약서 기재 하자보증기간 내에 산출물에 발생한 일체의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보수책임을 부담한다.
2. 도급인이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의 경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부담한다.
3. 수급인은 하자보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도급인에게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인은 도급인을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공으로 하자보증금의 ~~지금~~지급을 갈음할 수 있다.
4. 도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산출물에서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도급인으로부터 본조 제4항의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을 시에는 최단 시간 내에 응하여야 한다. 만일 최고 후 상당기간(최소 15일 이상으로 각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수급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비용으로 하자를 보수하고, 당해 비용을 하자보증기관에 청구하거나, 하자보증금에서 공제하여 도급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6. 도급인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지체없이 수급인에게 하자보증금 및 하자보수이행보험증권을 반환한다. 다만, 수급인이 보수할 하자가 남아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급인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8. 하자가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9. 하자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 고장 및 파손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
10. 도급인이 과업수행을 위해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결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다만, 도급인이 제공한 물품 또는 도급인의 지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수급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11. 양 당사자는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 별도로 하자보수에 관한 유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대방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등 보전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대방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7. 상대방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본 계약 일반조건 제30조에 따른 지체상금이 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9. 각 당사자가 수행계~~약~~획서 및 설계서에 기재된 데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대방이 시정요구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최고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1. 상대방이 본 계약 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2. 도급인이 수급인의 책임없이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인이 본 계약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13.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없이 본 계약의 이행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계약의 이행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4.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없이 본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기 내에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5. 수급인의 인력, 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본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6. 상대방이 불가항력을 이유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90일 이상 연속으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17.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8.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9.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20.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도급인은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계약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1.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22. 해지 또는 해제의 통지를 받은 후 계약의 이행을 지체없이 중지한다.
23. 본 일반조건 제9조에 따른 설비를 도급인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설비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24.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귀책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수급인은 해지 또는 해제 시 이행지체에 관한 손해에 관하여 본 일반조건 제30조 기재사항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한다.
25. 각 당사자는 본조 제1항 마호 및 제2항 바.호의 기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없다.

**제 33 조【계약의 해석 등】**

1.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민사법을 통하여 보충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이의가 있는 경우, 대한민국 민사법을 통하여 해석한다.
3. 각 당사자는 본조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의 보충과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민사법 및 일반 상관례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제 34조【본 계약의 성립】**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서(전자문서 포함)에 기명 날인함과 동시에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5 조【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이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3. 각 당사자는 본조에 따른 분쟁기간 중 상대방에게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제 36 조【관 할】**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별첨3]**

**납품상세서**

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  |  |  |  |
| --- | --- | --- | --- |
| **구분** | **업무구분** | **메뉴명** | **비 고** |
| TOS | Code Management | System Main Code |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공통 코드 관리 |
| Container Size Mangement | 컨테이너 사이즈 관리 |
| Container Type Mangement | 컨테이너 타입 관리 |
| Container ISO Management | ISO 사이즈 타입 관리 |
| Container Class Management | 컨테이너 클래스 관리 |
| Container Status Management | 컨테이너 상태 코드 관리 |
| Container Operator Management | 선사 코드 관리 |
| Equipment Management | 장비 코드 관리 |
| Container Lease Term Management | 컨테이너 Leasing Term 관리 |
| Virtual VVD Management | 선사별 가상 항차 관리 |
| Gate Lane Management | 게이트 진출입 Lane 관리 |
| Grounding Category Management | 야드 플랜 카테고리 관리 |
| Yard Design | Yard Scale Setting | CY 실측 사이즈 정보 관리 |
| Yard Design & Information | 블록 생성 관리 |
| Block Bay Cell Design | 블록별 베이 설정 관리 |
| Block Void & Lock Design | Void / Lock 관리 (설정구역에 반입안됨) |
| Yard Crane | Log In | 장비기사 로그인 화면 |
| Block List | 블록별 작업타입 별 작업 수량 화면 |
| 반/출입 작업 처리 | 반출입 상하차 처리 |
| 컨테이너 명세 조회 | 컨테이너 상세 정보 조회 |
| Re-Marshalling | 임의 이적 처리 |
| Gate ATM | In Gate ATM | 반입 ATM |
| Out Gate ATM | 반출 ATM |
| Trouble Booth ATM | 예외차량 처리 ATM |
| Yard Plan | Preffered Area Plan | 야드 플랜 생성 삭제 처리 |
| Plan Maintenance | Plan List 조회, 삭제 |
| Empty Pickup | Empty Pickup Plan | 공컨테이너 반출 플랜 수립 |
| Empty Auto Pickup Rule | 공컨테이너 오토 픽업 룰 등록 |
| Empty Auto Pickup Rule Setting | 공컨테이너 오토 픽업 룰 설정 |
| Container Holding Management | 컨테이너 홀딩 처리 (반입/반출 홀딩) |
| Empty Swap Management | 공컨테이너 상차 후 교체 처리 |
| Empty In/Out | Gate In/Out Option Management | 컨테이너 반출입 옵션 관리 |
| Operator Gate In/Out Option | 선사별 반출입 옵션 설정 |
| Booking Management | 부킹 관리 |
| Booking Detail Management | 부킹 상세 관리 (선사, 사이즈, 타입, 수량) |
| Gate Operation | Copino Management | 코피노 생성 수정 삭제처리 |
| Gate In / Out Progress | 야드내 차량 현황 조회 |
| Manual Gate In | 수동 게이트 인 처리 |
| Manual Gate Out | 수동 게이트 아웃 처리 |
| Monitoring | Yard View | 야드 재고 관리 화면 |
| Block View | 야드 재고 관리 화면 |
| Bay View | 야드 재고 관리 화면 |
| Container | Container Information | 컨테이너정보 조회 / 변경 / 삭제 / 히스토리 관리 |
| Engine | Container Grounding Engine | 컨테이너 반입시 장치장 배정 |
| Job Function | 작업 완료 / 취소 처리 |
| Empty Pickup Engine | Empty Pickup Contaier 배정 |
| System | User Management | 유저 관리 |
| User Group Management | 유저 그룹 관리 |
| EXE File Management | 실행 파일 등록 |
| Menu & EXE File Mapping | Menu / 실행 파일 Mapping |
| Related File Management | 실행 파일 이외 파일 등록 (DLL / XLS 등) |
| EXE & Related File Management | 실행파일과 Related 파일 Mapping |
| Web Admin | User Management | 개발자 관리 |
| User Authority Management | 개발자 권한 관리 |
| Menu Management | 화면 메뉴 관리 |
| Program Management | 내부 로직 관리 (SQL / PL\_SQL / Java Class) |

\*\* 상기 표 이외에 도급인 홈페이지 연계 목적의 프로그램 40본의 개발이 필요함.

\*\* 수급인은 연계목적 프로그램 40본 중 10본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개발방법론을 제공받아 자체 개발함.

\*\* 도급인은 COPINO/Booking/CODECO 등 반출입 예정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함.

\*\* 상기 기능 구성은 분석/설계 단계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Gate 설비 설치**

|  |  |  |
| --- | --- | --- |
| **항 목** | **세부 내역** | **수량** |
| * **반입레인(ATM 시스템)** | |  |
| EIR 프린터 | Zebra, 열전사/감열 겸용 최대 104mm인쇄 | 2 |
| Lane PC | Rack 내부 PC / 17" 모니터 포함 | 2 |
| ATM Rack | 제작사항(발주처 승인 조건), 방수/방열/방한 팬,  전원차단기단자함, 방수고무패드 등 | 2 |
| 인터폰(자기) | ATM내장형 | 2 |
| ATM 외부 스피커 | 30W | 2 |
| ATM 소형 엠프 | PA35H | 2 |
| 바코드스캐너 |  | 2 |
| * **게이트 통제실** |  |  |
| 인터콤(모기) | 독립형 | 1 |
| Switch | 24-port 10/100/1000 Ethernet Switch (영상,데이터 각1개) | 1 |
| * **배관/배선 공사** |  |  |
| 전원및통신배관 | 도로횡단구간 스틸배관매입 | 1 |
| 전원및통신배선 | 통신 및 전원케이블 | 1 |
| 컷팅및 파취 | 아스팔트 컷팅 | 1 |
| 통신용 박스 | 풀박스, 제작사양 | 2 |
| 복구 | 아스콘포장 및 되메우기 | 1 |
| 콘크리트타설 | 횡단구간 보강 | 1 |
| * **ECO : ATM System** |  |  |
| Lane PC | Rack 내부 PC/17" 터치 모니터 포함 | 1 |
| E.I.R PRINTER | Zebra, 열전사/감열 겸용 최대 104mm인쇄 | 1 |
| ATM Rack | 제작사항(발주처 승인 조건), 방수/방열/방한 팬,  전원차단기단자함, 방수고무패드 등 | 1 |
| ATM Rack 캐노피 | 제작사양( ATM Rack 좌/우/뒷면 보호가드 SUS 304 두께 2.5T 이상 | 1 |
| 인터폰(자기) | ATM내장형 | 1 |
| 스피커 | 30W | 1 |
| 바코드스캐너 |  | 1 |
| * **설치 공사** |  |  |
| 납품 및 설치 | 납품 테스트 포함 | 1 |
| LPR 인터페이스 | LPR 인터페이스 업체 개발 | 1 |
| * **무선 단말기** |  |  |
| LTE 단말기 | LT100K | 2 |
| 통신 | 내장형 LTE Module | 2 |
| 안테나 | LTE 외장형 Antenna | 2 |
| 전원 | DC/DC 컨버터 (input : 24V / Output : 12V) | 2 |
| 거치대 | LT100K용 거치대(주문제작), 거치대 암 포함 | 2 |
| 설치 | 장비 내부 전원공사 포함 | 2 |

\*\* 상기표 기재 과업범위에 각 Lane별 전원 및 Data선 배관, 배선 포함 / 지중관로 공사에서 터파기, 되메우기 포함

\*\* 상기표 기재 과업범위에 예외차량관리소 구조물 공사는 제외함.

\*\* 도급인은 Gate 설비 운영에 필요한 개통된 유심칩을 회사 제공하고, 무선 데이터 사용료를 별도 부담함.

1. **서버 및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  |  |
| --- | --- | --- |
| **항 목** | **세부 내역** | **수량** |
| **H/W** | **HP DL360 x86 Server (1P 8Core) => Silver 4208 1P 8Core, 256G mem, 300GB SAS x 4ea,   1G 4Port NIC x1ea, ODD 포함, Power 이중화** | |
| HPE ProLiant DL360 Gen10 8SFF NC Configure-to-order Server | 1 |
| Intel Xeon-Silver 4208 (2.1GHz/8-core/85W) FIO Processor Kit for  HPE ProLiant DL360 Gen10 | 1 |
| HPE 32GB 2Rx4 PC4-2933Y-R Smart Kit | 8 |
| HPE Smart Array P408i-a SR Gen10 Ctrlr | 1 |
| HPE 96W Smart Storage Lithium-ion Battery with 145mm Cable Kit | 1 |
| HPE Ethernet 1Gb 4-port FLR-T I350-T4V2 Adapter | 1 |
| HPE 500W Flex Slot Platinum Hot Plug Low Halogen Power Supply Kit | 2 |
| HPE 1U Gen10 SFF Easy Install Rail Kit | 1 |
| HPE 300GB SAS 12G Enterprise 10K SFF (2.5in) SC 3yr Wty Digitally  Signed Firmware HDD | 4 |
| HPE 9.5mm SATA DVD-ROM Optical Drive | 1 |
| HPE DL38X Gen10 Universal Media Bay Kit | 1 |
| HPE 3 Year Tech Care Essential DL360 Gen10 Service | 1 |
| Windows Svr Std 2019 64Bit Korean 1pk DSP OEI DVD 16 Core | 1 |
| Windows Server CAL 2019 Korean 1pk DSP OEI 5 Clt User CAL | 1 |
| **상용 S/W** | **가상화 솔루션 (Vmware)** | |
| VMware vSphere 7 Essentials Kit for 3 hosts (Max 2 processors per host) | 1 |
| Subscription only for VMware vSphere 7 Essentials Kit for 1 year | 1 |
| **IBM WAS BASE (Websphere)** | |
| IBM WebSphere Application Server Processor Value Unit (PVU)  License + SW Subscription & Support 12 Months | 280 |
| **개발툴** | |
| DevExpress WinForms v21 | 2 |
| Visual Studio Professional 2022 | 2 |

\*\* 상기 표 기재 과업에 서버 장비의 설치 및 기술지원포함

\*\* 상기 표 기재 과업에 서버 장비에의 상기표 기재 소프트웨어 설치 및 가상화 솔루션 기본 설치 포함

**[별첨6]**  **비밀유지조건**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비밀유지조건에 따라 계약일반조건 기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제1조【목적】**

본 비밀유지조건은 당사자간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1. 본 비밀유지조건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본조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1.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각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에게 관련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본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6. 본 비밀유지조건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7.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8. 각 당사자가 본조 제1항 제~~6호~~ 바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1.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1. 본 비밀유지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2. 본 비밀유지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본 비밀유지조건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비밀유지조건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4.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5.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기간 등】**

1. ~~본 비밀유지조건은 계약서에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2.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2년 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본 계약의 발효일 이전이든, 계약 기간 중이나 종료(해지 및 만료를 포함한다) 후를 막론하고 취득한 때부터 엄격히 비밀로 유지한다

**제9조【손해배상】**

본 비밀유지조건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일부무효의 특칙**】

본 비밀유지조건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비밀유지조건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1조【준용**】

본 비밀유지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중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서, 특수조건, 일반조건을 준용한다. 다만, 그 성질 상 준용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